

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6032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60322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17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민

피고, 항소인 E

변론종결 2023. 7. 20.

판결선고 2023. 8. 17.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17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 D, F(이하 B, C, D, F을 이를 때 제1심 공동피고를 생략한다)은 원고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제1심 판결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제1심 판결문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위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나. 원고에게,

1) B는 1,094,348원, 피고, C, D, F은 각 729,5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22. 4. 16.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B는 월 27,300원, 피고, C, D, F은 각 월 18,2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B, C, D, F에 대한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B, C, D,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이 사건 건물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부분을 삭제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50년 경 이 사건 H 토지와 J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였고, 2016. 10. 28.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2018. 6. 19.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들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민경, 판사 이장욱, 판사 이현주